

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7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5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8년 7월 15일) 상정
- 제145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8년 7월 15일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보건관리과장 종석목)

□ 제안이유

- 「정부조직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852호, 2008. 2. 29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“보건복지부”를 “보건복지가족부”로 변경함.(안 제8조제2항 및 제11조)
-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으로 변경함.(안 제9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데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권고했던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위원회를 통합할 계획인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으로 추진중임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정부 지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위원회 설치 의무규정이 있는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66호
의결 년월일	2008. 7. 18 (제145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6. 3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정부조직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852호, 2008. 2. 29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“보건복지부”를 “보건복지가족부”로 변경함.(안 제8조제2항 및 제11조)
- 나.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으로 변경함.(안 제9조)

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3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사업위탁에 관하여”를 “사업위탁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”를 “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”로 한다.

제3조제5항·제7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5. 가정방문·내소·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의 관리

7.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·교육 등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

9. 보건소, 시·구청, 동주민센터, 학교, 사회복지시설,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자문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제3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“위탁금액(경비보조)”를 “위탁금액(경비보조를 말한다)”으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필요시”를 “필요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관계법령, 조례”를 “관계 법령·조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 안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침의 회계 관리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사업기준에 따라”로 하고, “사회복지법인재무·회계규칙”을 “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“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이용·입소비용 수납 한도액 고시”에 의한다”를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보건복지부 「정신보건사업지침」”을 “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사업기준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·운영 및 사업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제13조에 따라----- ----- --사업위탁에----- -----.
제2조(소재지)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원미구보건소 안에 둔다.	제2조(소재지)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----- -----.
제3조(센터의 업무) (생략) 1.~4. (생략) 5. 사례관리(가정방문·내소 상담·전화상담을 통한 사례 관리) 6. (생략) 7.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(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관련 상담·교육 등)	제3조(센터의 업무) (현행과 같음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가정방문·내소·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의 관리 6. (현행과 같음) 7.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·교육 등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
8. (생략) 9. 지역 내 정신보건 자문(보건소, 시·구청, 동사무소, 학교, 사회복지시설, 경찰 등 대상 정신보건관련 자문)	8. (현행과 같음) 9. 보건소, 시·구청, 동주민센터, 학교, 사회복지시설,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자문
10. (생략) 11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에 관한 사업	10. (현행과 같음) 11. 그 밖에----- -----
제5조(사업의 위탁) ① (생략) 1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3호의	제5조(사업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1. -----제3조제3호에

현행	개정안
<p><u>규정에 의한</u> 정신의료기관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, <u>위탁금액(경비보조)</u>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<u>기타</u>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위탁기간은 협약 일부터 3년으로 하되, <u>필요시</u> 재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예산, 사업내용 및 목표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결정한다.</p> <p>제6조(위탁의 취소) (생략)</p> <p>1. 수탁자가 <u>관계법령, 조례</u>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</p> <p>제7조(운영비 지원) 시장은 <u>제5조의</u>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회계 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<u>보건복지부의</u>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침의 회계 관리 규정에</p>	<p><u>따른</u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</u>----- -----<u>위탁금액(경비보조를 말한다)</u>----- -----<u>그 밖에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<u>필요할 때에는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위탁의 취소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u>관계 법령·조례</u>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제7조(운영비 지원) -----<u>제5조에 따라</u>----- -----<u>범위안</u>----- -----.</p> <p>제8조(회계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보건복지가족부의</u> <u>정신보건사업기준에 따라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의하여 이를 집행하되, 이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<u>사회복지법인재무·회계규칙</u>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</p> <p>제9조(이용료 등)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<u>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“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이용·입소비용 수납 한도액 고시”</u>에 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.</p> <p>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지역보건법」· 「정신보건법」·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및 <u>보건복지부 「정신보건사업지침」</u>을 준용한다.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----- -----<u>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」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이용료 등) ----- -----<u>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사업기준</u>-----.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에</u>----- ----- -----.</p>